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6,900,275,079	207,008,252
일반회계		6,170,440,099	185,113,203
특별회계		729,834,980	21,895,049
	기타특별회계	729,834,980	21,895,049
	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	4,161,703	124,851
	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	55,877,974	1,676,339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31,102,122	12,933,064
	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	6,400,026	192,001
	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	143,710	4,311
	소방특별회계	232,149,445	6,964,483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 명시이월 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5,283,565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60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